

#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1638
----------	------

2024년 3월 8일  
행정자치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자 : 서울특별시장  
나. 제안일 : 2024년 2월 5일  
다. 회부일 : 2024년 2월 7일  
라. 상정일 : 제32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 
2024년 3월 4일 상정·의결(수정안가결)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행정국장 이동률 )

### 가. 제안이유

- 초등학교 입학기 및 적응기인 6세 이상 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이 경력단절 없이 일하면서 탄력적으로 자녀지도할 수 있도록 특별휴가 신설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6세 이상 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12개월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교육지도시간(특별휴가)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신설함(안 제24조제5항).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7조의7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.

다. 협의사항

(1) 법무담당관(규제심사): 규제없음

(2) 예산담당관(비용추계)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

(3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: 평가제외

(4) 양성평등담당관(성별영향평가): 개선사항 없음

(5) 시민협력과(공공갈등진단): 갈등사항 없음

(6) 조직담당관(위원회 신설): 해당없음

(7)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·본부·국 검토의견: 해당없음

라. 입법예고(2023.11.16.~12.06.) 결과: 의견있음(미반영)

입법예고결과 요약서		
의견제출자	제 출 의 건	조 치 내 용
○○○ 외 2	사용기간을 12개월 범위에서 36개월 범위까지 확대.	○ 미반영 - 대상자녀의 연령 및 사용기간 확대여부는 제도 시행 이후, 대내외적으로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후 검토 필요.  ※ 금번에 신설하는 특별휴가는 초등학교 자녀의 학령기 초기 준비 및 적응을 돕기 위한 취지로 6세 이상 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이 12개월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교육지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.
□□□ 외 1	사용대상 자녀 연령을 6세 이상 8세 이하에서 초등학교 3~6학년 까지 확대.	
△△△ 외 1	사용대상 자녀 연령 및 사용기간 모두 확대.	

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수석전문위원 김태한)

### 1) 특별휴가 조항 신설(안 제24조)

- 본 일부개정조례안(이하 '본 개정안')은 6세 이상 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이 12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교육지도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특별휴가를 규정하려는 것임(안 제24조제5항 신설).

현행	개정안
제24조(특별휴가) ① ~ ④ (생략) <u>&lt;신설&gt;</u>	제24조(특별휴가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⑤ (생략)	⑤ <u>6세 이상 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12개월의 범위에서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준비, 학교 적응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교육지도시간을 받을 수 있다.</u>
⑥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공무원이 신청하면 제5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.	⑥ (현행 제5항과 같음)
⑦ ~ ⑬ (생략)	⑦ ----- ----- 제6항 ----- ----- -----
⑭ 제13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, 자녀(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)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(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	⑧ ~ ⑭ (현행 제7항부터 제13항까지와 같음)
	⑮ 제14항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<p>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공무원이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)까지 유급으로 한다.</p> <p>⑰·⑱ (생략)</p>	<p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⑰·⑱ (현행 제17항 및 제18항과 같음)</p>
---	---

-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휴가는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7조의7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에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, 상위규범과의 충돌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「지방공무원법」 제59조(위임규정)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7조의7(특별휴가)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다만,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- 현행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1일 최대 2시간 이내 24개월의 범위에서 육아시간 지원을 받고 있는 반면, 초등학교 입학 및 적응기인 6세 이상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육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유급 특별휴가를 통해 교육·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짐.
- 다만, 대상자가 현원(9,603명)의 9.4%(900명) 수준인 바, 특별휴가 신설에 따른 업무 공백 가능성에 대한 대비와 함께 실질적인 특별휴가 사용이 가능하도록 전반적인 근무환경 및 조직문화 개선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〈 6세 이상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 현황 〉 ('24.1.31.기준)

구분	현원 계	6세 이상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	비율
계	9,603	900	9.37

\* 현원 : 본청 및 사업소의 일반직, 임기제 공무원 전체(시선제, 한시 제외)

- 아울러, 특별휴가 사용 시 초과근무를 할 수 없는 바, 이로 인해 특별휴가 사용률이 저하될 소지는 없는지에 대한 검토와 함께, 추후 특별휴가 시행에 따른 서울시공무원 출산율 변동사항 및 본 개정안으로 신설되는 “교육지도시간”을 위한 특별휴가 활용률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후속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- 한편, 그동안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·가사 휴직과 휴가 제도를 늘려 왔으나, 실질적인 저출산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.
  - 육아 휴직자의 민원 등을 살펴보면 휴직 후 근평과 보직관리에 대한 배려가 없는 등 조직관리의 공정성과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조직문화에서 출산 및 육아에 대한 동기 부여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음.
  - 출산·육아 휴직·휴가자에 대한 조직 차원에서의 적극적 배려에 대한 의회차원의 독려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.

〈 육아관련 휴직·휴가 관련 최초 신설 현황〉

구분	종류	휴직(휴가) 일수	신설 일자
휴직	육아가사휴직	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	1995. 1. 1.
휴가	출산휴가	출산 전후 총 90일 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 임신한 경우 120일)	2006.11.1.
	모성보호시간	임신 기간중 日 2시간 이내	2013. 5. 13.
	5세이하 육아시간	日 최대 2시간 이내, 24개월 이내	2017. 4. 25.
	임신검진휴가	임신 기간 중 10일	2019. 12. 31.
	가족돌봄휴가	10일 이내 (미성년 자녀돌봄, 장애자녀의 부모, 한부모공무원 2~3일 유급, 그 외 가족돌봄 사유 무급)	2020. 10. 20.

## 2) 자구표현 정비(안 제7조, 제8조, 제11조, 제13조, 제22조, 제26조)

- 안 제7조, 제8조, 제11조, 제13조, 제22조 및 제26조는 조례의 표현 문구를 띄어쓰기 등 어문규범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.

※ 안 제7조 : “대비하기위한” → “대비하기 위한”

“범위 안” → “범위”

※ 안 제8조 : 이하“출장공무원” → 이하 “출장공무원”

※ 안 제11조 : “15일 범위 안” → “15일의 범위”

※ 안 제13조 : “범위 안” → “범위”

※ 안 제22조 : “범위 안” → “범위”

※ 안 제26조 : “범위 안” → “범위”

- 조례의 문구·표현 등을 정비하여 각 조항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용어 정비는 조례나 규칙 등을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, 법적 안정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.

**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.**

**6. 토 론 요 지 : 없 음.**

## 7. 수 정 안 의 요 지

### 가. 수정이유

-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면서 6세 이상 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의 교육지도시간 사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사용범위를 당초 12개월에서 24개월로 수정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6세 이상 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의 교육지도시간(특별휴가) 사용범위를 24개월로 수정함.(안 제24조제5항).

8. 심 사 결 과 : 수정안 가결(재석위원 6명, 전원찬성).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.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.

#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 련 1638
----------	--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4년 3월 8일  
제 안 자 : 행정자치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면서 6세 이상 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의 교육지도시간 사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사용범위를 당초 12개월에서 24개월로 수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6세 이상 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의 교육지도시간(특별휴가) 사용범위를 24개월로 수정함.(안 제24조제5항).



#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4조제5항 중 “12개월”을 “24개월”로 한다.

〈 수정안 조문 대비표 〉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정   안	수   정   안
제24조(특별휴가) ① ~ ④ (생략) <u>&lt;신설&gt;</u>	제24조(특별휴가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<u>⑤ 6세 이상 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12개월의 범위에서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준비, 학교 적응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교육지도시간을 받을 수 있다.</u>	제24조(특별휴가) ① ~ ④ (개정안과 같음) <u>⑤ 6세 이상 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준비, 학교 적응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교육지도시간을 받을 수 있다.</u>

##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###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대비하기위한”을 “대비하기 위한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범위 안”을 “범위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이하“출장공무원””을 “이하 “출장공무원””으로 한다.

제11조 중 “15일 범위 안”을 “15일의 범위”로 한다.

제13조제2항 단서 중 “범위 안”을 “범위”로 한다.

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“범위 안”을 각각 “범위”로 한다.

제24조제5항부터 제14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5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7항(중전의 제6항) 중 “제5항”을 “제6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5항(중전의 제14항) 중 “제13항”을 “제14항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7항 및 제18항을 각각 제16항 및 제17항으로 한다.

⑤ 6세 이상 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준비, 학교 적응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교육지도시간을 받을 수 있다.

제26조 중 “범위 안”을 “범위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< 신·구 조문대비표 >**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당직근무와 비상근무) ① (생략)</p> <p>② 소속기관의 장(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조 각 호의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전시·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에 <u>대비하기 위한</u> 훈련을 할 경우에는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 <p>④ 당직근무자에게는 해당연도 예산의 <u>범위</u> 안에서 실제비용을 고려하여 당직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, 지급기준 등 당직과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.</p>	<p>제7조(당직근무와 비상근무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대비하기 위</u> <u>한</u> ----- 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 <u>범위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8조(출장공무원) ① 상사의 명에 따라 정규 근무지 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(이하 "<u>출장공무원</u>")이라 한다)은 해당 공무 수행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하며 개인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안</p>	<p>제8조(출장공무원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이하 "출장공무원"</u>----- ----- ----- -----</p>

된다.

② ~ ④ (생략)

제11조(해직된 공무원의 근무) 시  
장은 해직된 공무원의 직무처리  
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5  
일 범위 안에서 계속 근무하게  
할 수 있다

제13조(근무시간 등) ① (생략)

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  
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, 점심  
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  
다. 다만,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  
성질·근무지역 또는 기관의 특  
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  
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 안에  
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  
영할 수 있다.

③·④ (생략)

제22조(병가) ① 소속기관의 장은  
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  
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 
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  
가할 수 있다. 이 경우 질병이나  
부상으로 인한 지각·조퇴·외  
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 
계산하고, 제21조제4항에 따라  
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

---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해직된 공무원의 근무) --  
-----  
----- 15  
일의 범위-----  
-----

제13조(근무시간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범위-----  
-----

③·④ (현행과 같음)

제22조(병가) ①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범위-----  
-----  
-----

수는 이를 병가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

1. 2. (생략)

②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.

③ (생략)

제24조(특별휴가) ① ~ ④ (생략)

<신설>

⑤ (생략)

⑥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공무원이 신청하면 제5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.

⑦ ~ ⑬ (생략)

⑭ 제13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

-----  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 범위-----  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24조(특별휴가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
⑤ 6세 이상 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준비, 학교 적응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교육지도시간을 받을 수 있다.

⑥ (현행 제5항과 같음)

⑦ -----  
----- 제6항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⑧ ~ ⑭ (현행 제7항부터 제13항까지와 같음)

⑮ 제14항-----

는 무급으로 하되, 자녀(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)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(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공무원이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)까지 유급으로 한다.

⑰ · ⑱ (생략)

제26조(공무 외의 국외여행)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 안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.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⑰ · ⑱ (현행 제17항 및 제18항과 같음)

제26조(공무 외의 국외여행) -----  
----- 범위 -----  
-----  
-----